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칙(050203)

제정 2008. 8. 1. 세칙 제248호

개정 2010. 12. 28. 세칙 제322호

개정 2012. 10. 25. 세칙 제359호

개정 2022. 9. 27. 세칙 제62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2.9.2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준정부기관·다른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개정 10.12.28, 12.10.25>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5. <삭제 22.9.27.>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2.9.27.>

③ 제2항의 예비명부를 작성할 경우 공고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예비명부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0.12.2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

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0.12.28, 22.9.27.>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12.10.25>

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2.9.27.>

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12.28, 22.9.27.>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2.9.27.>

⑦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2.9.27.>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동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첨순서를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하게 한 후 추첨순서에 따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고 추첨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10.12.28>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 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2.9.27.>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예비 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2.9.27.>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2.9.27.>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2.9.27.>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10.12.28>

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2.9.27.>

③ 제안요청서 등에서 제안업체가 제안서 작성

시 상호, 대표자명, 부호 등 식별가능정보 사용을 금지한 경우 평가위원은 식별가능정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안업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다. <신설 22.9.27.>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 제안서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2.9.27.>

부 칙<08. 8. 1>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2. 28>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0. 25>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조 제2항관련)】 <개정 22.9.27.>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3조 제7항관련)】 <신설 22.9.27.>

보안각서

○ 사업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5조 제1항관련)】 <신설 22.9.2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제6조 제2항관련)】 <개정 22.9.27.>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김○○		
신○○		
서○○		
조○○		
최○○		
박○○		
홍○○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별지 제6호서식(제8조 관련)】 <신설 22.9.27.>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평가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발주부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